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엄태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713

발의연월일: 2025. 6. 11.

발 의 자: 엄태영·조지연·박덕흠

김재섭 · 박충권 · 이양수

이만희 • 윤한홍 • 서천호

김상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귀임업인·귀산촌인에 대한 지원 근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, 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상 귀농어업인·귀촌인 지원에 포함되어 있음.

그런데 산촌은 산림면적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 서 농어촌에 비하여 거주 환경이 더욱 열악하고, 현행 귀농어·귀촌 지원 사업이 임업 및 산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귀 임·귀산촌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청년 및 중장년의 산촌 유입을 촉진하고 귀임업인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등 산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귀임·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(안 제24조의2 신설)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임업인·귀산촌인에 대한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의3 신설

등).

법률 제 호
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에 제2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의2. "귀임업인"이란 산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임업인이 아닌 사람이 임업인이 되기 위하여 산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6의2. "귀산촌인"이란 임업인이 아닌 사람 중 산촌에 자발적으로 이 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23조제7항 중 "제24조"를 "제24조, 제24조의2"로 한다.

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4조의2(귀임·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산림청장은 귀임업인과 귀산촌인의 안정적인 산촌 정착 및 임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임·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귀임・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.
 - 1. 귀임ㆍ귀산촌 현황과 전망
 - 2. 귀임ㆍ귀산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

- 3. 귀임ㆍ귀산촌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- 4. 귀임·귀산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
- 5. 귀임 · 귀산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
- 6. 귀임업인과 귀산촌인의 주거, 생활 및 임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
- 7. 귀임 · 귀산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
- 8. 그 밖에 귀임ㆍ귀산촌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산림청장은 귀임・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귀임·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귀임·귀산촌 지원 시행계획 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- 제24조의3(귀임업인·귀산촌인 등 정착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임업인과 귀산촌인이 안정적으로 임업을 하거나 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임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귀임·귀산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

-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
- 제24조의4(귀임 초기에 대한 지원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임 업인이 임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 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임업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임업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귀임업인에 대한 지원기준과 대상 및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4조의5(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임 업인 및 귀산촌인의 생활안정, 임업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 - 1. 귀임업인 · 귀산촌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
 - 2. 귀임업인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기술ㆍ경영컨설팅 지원
 - 3. 귀임업인ㆍ귀산촌인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임업인 및 귀산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·신축·수리 또는 임차하거나 삼림주택 공동체 시설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4조의6(귀임·귀산촌 지원에 관한 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)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귀임·귀산촌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

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-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거나 받고 자 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·재배 장 등을 출입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 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제2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9조의6(지원금의 환수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의3부터 제24조의5까지에 따른 지원금(이하 이 조, 제32조의2, 제33조에서 "지원금"이라 한다)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
 - 2.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 - 3.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
 -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.

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기준,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1조제3항 중 "산림청장은"을 "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"으로, "산림조합이나"를 "산림조합, 제27조의3에 따른 지원센터나"로 한다. 제31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3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귀임·귀산촌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산림조합, 지원센터 또는 관 련 기관·단체의 임직원

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2조의2(벌칙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3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귀임·귀산촌 지원에 관한 적용례) 귀임·귀산촌 지원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산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적용하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·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<u>2</u> 의2. "귀임업인"이란 산촌 이
	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임업인
	이 아닌 사람이 임업인이 되
	기 위하여 산촌 지역으로 이
	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
	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
	사람을 말한다.
3. ~ 6. (생 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6의2. "귀산촌인"이란 임업인이
	<u>아닌 사람 중 산촌에 자발적</u>
	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
	<u>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</u>
	<u>다.</u>
7. · 8. (생 략)	7.・8. (현행과 같음)
제23조(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	제23조(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
등) ① ~ ⑥ (생 략)	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시・도지사(특별자치시장은	⑦
제외한다. 이하 <u>제24조,</u> 제25조	<u>제24조, 제24조</u>
및 제28조에서 같다)는 기본계	<u>의2,</u>
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	

고려하여 특별시·광역시·도 ·특별자치도 산촌진흥계획(이 하 "시·도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8·9 (생략) <신설>

8·9 (현행과 같음)

제24조의2(귀임·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산림청 장은 귀임업인과 귀산촌인의 안정적인 산촌 정착 및 임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임·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② 귀임·귀산촌 지원 종합계 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귀임ㆍ귀산촌 현황과 전망
- 2. 귀임·귀산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
- 3. 귀임·귀산촌 관련 실태조사 에 관한 사항
- 4. 귀임·귀산촌 관련 교육훈련 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
- 5. 귀임·귀산촌의 홍보 및 정 보화 촉진 방안
- 6. 귀임업인과 귀산촌인의 주거, 생활 및 임업 경영 지원

에 관한 사항

- 7. 귀임·귀산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
- 8. 그 밖에 귀임·귀산촌 지원 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
- ③ 산림청장은 귀임·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귀임·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 하여 5년마다 귀임·귀산촌 지 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.

제24조의3(귀임업인·귀산촌인 등 정착 지원)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귀임업인과 귀산촌 인이 안정적으로 임업을 하거 나 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다. 이 경우

<u><신 설></u>

<u><신 설></u>

<신 설>

산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임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귀임·귀산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

제24조의4(귀임 초기에 대한 지원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임업인이 임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등으로 안정적인 임업 경영이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임업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귀임업인에 대한 지원기준과 대상 및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
제24조의5(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귀임업인 및 귀산촌인의 생

활안정, 임업 경영기반 조성을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지원할 수 있다.

- 1. 귀임업인·귀산촌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
- 2. 귀임업인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・기술・경영컨설팅 지원
 3. 귀임업인・귀산촌인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
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임업인 및 귀산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・신축・수리 또는 임차하거나 삼림주택 공동체 시설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, 방법 및 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수 있다.

제24조의6(귀임·귀산촌 지원에 관한 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) ① 산림청장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귀임·귀산촌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

<신 설>

<신 설>

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 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 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「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 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. ③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·재배장 등을 출입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게 내보여야 한다.

제29조의6(지원금의 환수) ①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의 3부터 제24조의5까지에 따른 지원금(이하 이 조, 제32조의2,

제31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· 제31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· ② (생략)

③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권한의 일부를 「산림조합법」 에 따른 산림조합이나 그 밖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33조에서 "지원금"이라 한다) 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 수할 수 있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
- 2.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- 3.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 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반 환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 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 수기준,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- ② (현행과 같음)
 - <u>는</u>-----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조합, 제27조의3에 따른 지원센 터나-----

제31조의2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1. • 2.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제33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제31조의2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
의제)
1.・2. (현행과 같음)
3. 제3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
<u>장 또는 시·도지사로부터 위</u>
<u>탁받은 귀임·귀산촌 지원 업</u>
무에 종사하는 산림조합, 지
원센터 또는 관련 기관·단체
 의 임직원
제32조의2(벌칙) 거짓이나 그 <u>밖</u>
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
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
금을 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
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
<u>금에 처한다.</u>
제33조(벌칙)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

용도에 사용한 자